

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
제정 2021. 9. 27 조례 제2178호
일부개정 2022. 5. 17 조례 제2313호
일부개정 2023. 7. 31 조례 제242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
일괄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에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 5. 17, 2023. 7. 31>

1. “주거복지”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주거복지 대상자”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
 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
 - 다.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약자
 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마. 「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청년
 - 바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 - 사.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
 - 아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자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

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주거복지기본계획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
3.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
4.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5.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주거실태조사)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「주거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·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5. 17>

1. 주거복지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2.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차료 등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
3.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
4.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
5.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
6.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

제7조(주거복지심의위원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 용인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3.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위탁·관리 및 운영·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소관 실·국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1. 주택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
2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
3.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9조(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주거복지센터)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
2.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지원
3. 임대주택 등의 입주, 운영,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

- 4. 주거복지 관련 기관, 단체의 연계 지원
- 5.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- 6.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
- 7.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

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·인력을 갖춘 기관에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5. 17>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기관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5. 17 조례 제231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31 조례 제242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
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